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의 운용자산별 상품설명서(투자설명서) 외 판매사가 고객님께 안내하여야 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상품에 대한 정보는 **교부 받으신 운용자산별 상품설명서(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부 받으신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 작성용	가입하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 계약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직원 성명 (서명/날인)

본 상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명칭으로 체결하는 특정금전신탁으로, 당행이 고객(투자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해당 운용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입니다. 예·적금, 집합투자기구(펀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고, 당행은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펀드)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에 따라 달리 운용되는 실적배당형 금융투자상품입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1좌당 순자산가치(NAV)의 변동률을 기초지수(BM)의 변동률과 유사하게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즉,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므로 증권시장 관련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등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위험등급	채무증권/단기상품/예적금 위험등급 분류기준	유의사항
1등급 매우높은위험	신종자본증권(BBB+ ~ BBB-) 조건부자본증권(BBB+ ~ BBB-) 주식관련사채(BB+ 이하)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위험	신종자본증권(A+ ~ A-), 조건부자본증권(A+ ~ A-) 회사채(BB+ ~ BB-), 주식관련사채(BBB- 이상) CP/전단채(B+ 이하 또는 무등급)	
3등급 다소높은위험	신종자본증권(AA+ ~ AA-), 조건부자본증권(AA+ ~ AA-) 회사채(BBB+ ~ BBB-) CP/전단채(A3+ ~ A3-)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위험	회사채(A+ ~ A-) CP/전단채(A2+ ~ A2-) ELB/DLB(A+ ~A-)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위험	회사채(AAA ~ AA-) 특수채(AA+ ~ AA-)/은행발행금융채(AA+ ~ AA-) CP/전단채(A1) 기간물RP/발행어음(AA-이상 기간물) ELB/DLB (AAA ~ AA-) 예적금(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투자원금의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낮은위험	국고채/통안채/지방채 특수채(AAA)/은행발행금융채(AAA) 일일물RP/발행어음(AA이상 일일물) 은행발행CD, 콜론, 종금겸영은행 발행어음 예적금(은행법 등에 따른 은행 예·적금)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 상품설명서

▣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절차 안내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주은행 콜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jejubank.co.kr)**를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에 분쟁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권리 보호 사항 안내

안내 사항	내용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계약에 관련한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를 열람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해 드립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 계약 해지 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한 경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하여 드리며, 수락 시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단,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합니다.
구속행위의 금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 가입일 기준 **1개월 이내 대출 실행 요청 시 제한**이 있습니다. 추가입금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추가입금 후 1개월 이내 대출 실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계획이 있으신 경우 사전에 영업점 직원 등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숙려 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일반투자자)에게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숙려기간(2영업일)을 부여하고 3영업일에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만 신탁한 금전을 운용 합니다.**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은 개별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빈도 문의 사항	Q) 만 19세 이상 대학생, 주부 등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2021년부터 만 19세 이상 거주자인 경우 소득이 없어도 ISA 일반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징구하여 소득금액이 0원(근로소득 5,000만원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도 포함)인 경우에는 서민형으로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만 15세 이상 만 19세 미만 근로소득 자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집합투자증권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시 불이익 사항 포함)	**[임의해지]**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펀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위의 3, 4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의무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지체없이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자는 위의 임의해지 및 의무해지 발생 시 당행으로부터 환매수수료 및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때 공제한 금액 및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 상품설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 주요내용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신탁형)	고객(위탁자)과 제주은행(수탁자) 간에 특별한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금전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 관리, 처분 등을 하는 계약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체결하는 특정금전신탁입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운용대상상품을 직접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 등의 제약을 받습니다.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로서 ①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②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전 금융회사 1인 1계좌**만 가능
부적격자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대상자**일 경우, **계약해지 및 감면세액 추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경우, 이 신탁에 대한 **추가입금이 제한**되고, **세제혜택분은 추징되며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또한 **예·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 등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국세청 부적격자 확인 통보일로부터 2개월(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반드시 제주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상품내용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가입자는 은행연합회 한도 설정 금액**(실제 납입금액이 아님)**을 차감한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동안 미불입한도는 다음연도 한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의무가입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의 해지가 아닌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세특례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예금자보호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
운용상품 (운용자산)	**예·적금**, 집합투자증권(펀드), 파생결합증권(ELS/DLS/ELB/DLB), ETF/ETN, 주식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상품 단, 제주은행 및 계열회사 정기예금은 운용할 수 없습니다.
운용	위탁자별 신탁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 운용 및 계산하는 상품으로 위탁자별 운용방법, 신탁기간, 신탁보수 및 이익계산방법 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에서 정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합니다.
약관 기재사항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 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지시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해야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액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등의 대가로서 일정한 금액을 신탁보수(후취)로 취득합니다. **운용자산 / 보수계산방법 / 비고** 정기예금 · 수익증권 · ETF / 보유기간 평가금액 평균잔액 x 연 보수율 / ※ 운용자산별 보수율 - 정기예금 : 연 0.10% - 수익증권 : 연 0.20% - 파생결합증권 : 연 0.30% 파생결합증권 / 매입금액 x 연 보수율 / (위 비고 동일) 각 운용자산별로 계산한 신탁보수를 해지 시 징수하므로 **중도/만기 해지 시 신탁보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자산관리수수료나 선취판매수수료 등의 추가 수수료는 없으며, 상기 계산처럼 운용자산별로 계산된 후취보수만 부과됩니다. 보수는 해지 시 전체 기간 중 발생한 금액을 차감하므로, 운용자산 만기/재예치시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 상품설명서

▣ 가입대상 및 적격 확인서류, 납입한도, (의무)가입기간, 과세 등

구분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세 ~ 만 19세 미만 거주자		농어민
	일반형	서민형	일반형	서민형	
대상	-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가입 서류	실명확인증표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농·어업인 확인서 +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의무 보유기간 (만기)	3년 (만기는 3년 이상 계별 계약에 따라 자율 결정하고 연장도 가능)				
분리과세 적용	계좌 내 과세 대상 상품별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순이익에 대하여 비과세한도 200만원(또는 4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적용				
추가 세액공제	ISA 만기자금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 계좌에 입금 시 납입액의 10%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 한도)**				

※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자에 따르는 위험

운용자산 투자위험

[정기예·적금]

1. **이율 변동 위험**
   예금의 만기 도래로 인한 재예치 시 재예치 당시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최초 운용지시 시점의 이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도 최초 적용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예금자보호**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집합투자증권(펀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1.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시장위험**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3.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ELS 등)]

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위험**
   ELS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 신용위험**
   발행회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증권이므로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이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 상품설명서

▣ 투자에 따르는 위험 (계속)

만기 불일치 위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만기와 운용자산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기 시점에 운용자산을 매도하여 손익을 실현시킨 후, 과세특례를 적용하므로 중도환매수수료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손실 가능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운용상품에 따라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운용결과 원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손실을 보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단,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고객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호되나,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기책임의 원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고객의 운용지시를 받은 은행이 해당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하는 신탁계약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제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적금은 앞장의 내용에 따름)**

▣ 계약해지 및 연장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계약 만기시점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점에 보유자산(상품) 모두를 환매 또는 매도하지 않을 경우, 전체 가입기간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기시점에 고객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더라도 **운용 중인 모든 상품을 일괄 매도** 신청하여 **편입상품 중 가장 마지막으로 현금화되는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계약 만기일에 집합투자증권(펀드) 및 파생결합증권(ELS),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을 보유하는 경우, 만기일 해당상품의 가격과 상관없이 자동매도 신청되오니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기일 전 환매신청하는 등 수익관리가 필요합니다.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고객의 요청에 의해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체에 대한 해지만 가능(일부해지 불가)하며 이 경우 세제혜택 적용이 불가능하여 손익통산에서 제외되고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운용중인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탁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시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특별해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징된 세액은 모두 해당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중도인출	납입원금 범위내에서 중도인출 가능하며, 중도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세제혜택은 유지됩니다. 중도인출 시 계산된 세금 및 신탁보수 등은 고유계정대로 운용하며, 다른 상품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중도인출 신청 시 편입상품별로 현금화되는 기간이 상이하며 가장 늦게 현금화되는 상품의 매도 완료일 다음 영업일에 지정하신 연결계좌로 입금됩니다.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연장 가능 시기는 **만기일의 3개월 전부터 계약 만기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만기 연장의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기존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장 시 가입자 유형(일반형/서민형) 판단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장된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대상자일 경우, 계약해지 및 감면세액 추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 가입자가 만기 연장 시 일반형 자격으로 변경되는 경우, **만기 연장 후 유형인 일반형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 200만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특별해지 사유 : 사망, 해외이주 또는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영업인가·허가의 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주은행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는 상품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투자상품 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한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ELS/ELB는 별도의 (간이)투자설명서가 없으므로 해당 운용자산에 대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